# 동산·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전재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64

발의연월일: 2020. 6. 15.

발 의 자:전재수·전용기·송옥주

최인호 · 고용진 · 허 영

박재호 · 이병훈 · 이장섭

김철민 · 고영인 의원

(11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이 법에 따른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인적범위는 법인 또는 「상업등기법」에 따라 상업등기를 한 사람으로 한정됨.

그러나 전체 등록 개인사업자 중 상호등기 사업자 비중이 매우 낮아 사실상 중소기업·자영업자 대부분은 현행법에 따른 담보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임.

이에 담보권설정자를 범위를 '법인 또는 상호등기를 한 사람'에서 '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'으로 확대하는 한편, 채권담보에 대 해서도 「민사집행법」상 압류금지채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도록 함 으로써 대부업자 등에 의한 제도 악용을 방지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(안 제2조 등).

#### 법률 제 호

# 동산·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동산·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호 단서 중 "「상업등기법」에 따라 상호등기를"을 "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라 사업자등록을"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"「상업등기법」에 따라 상호등기를"을 "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라 사업자등록을"로 한다.

제4조의 제목 중 "상호등기"를 "사업자등록"으로 하고, 같은 조 중 "상호등기가"를 "사업자등록이"로 한다.

제27조제1항 전단 중 "법인등기 또는 상호등기"를 "주소(법인인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. 이하 같다)"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"즉시 담보권자가"를 "즉시 담보등기부에 등기되어 있거나 담보권자가"로 한다.

제30조제1항 중 "법인등기 또는 상호등기를"을 "주소를"로 한다.

제37조 중 "제2장과 「민법」 제348조 및 제352조를"을 "제2장과 「민법」 제348조, 제352조 및 「민사집행법」 제273조제3항을"로 한다.

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재지를"을 "담보권설정자의 주소를"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.

제4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

같이 신설한다.

1. 담보권설정자의 성명,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(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,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) 3의2. 담보권설정자나 담보권자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 거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「부동산등기법」 제49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부여받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

제51조제2항 중 "법인등기부나 상호등기부상"을 "법인등기부상"으로, "사무소나 영업소"를 "사무소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법인등기나 상호등기를"을 "법인등기를"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"담보권설정자"는 이 법에	5
따라 동산·채권·지식재산권에	
담보권을 설정한 자를 말한	
다. 다만, 동산·채권을 담보	
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	
(상사법인, 민법법인, 특별법	
에 따른 법인, 외국법인을 말	
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<u>「상</u>	
업등기법」에 따라 상호등기	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라 사
<u>를</u> 한 사람으로 한정한다.	<u>업자등록을</u>
	<u>.</u>
6. ~ 11. (생 략)	6. ~ 11. (현행과 같음)
제3조(동산담보권의 목적물) ①	제3조(동산담보권의 목적물) ① -
법인 또는 <u>「상업등기법」에</u>	「부가가치세법」에-
<u>따라 상호등기를</u> 한 사람(이하	따라 사업자등록을
"법인 등"이라 한다)이 담보약	
정에 따라 동산을 담보로 제공	
하는 경우에는 담보등기를 할	
수 있다.	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4조(담보권설정자의 <u>상호등기</u> 기 말소와 동산담보권의 효력) 담 보권설정자의 <u>상호등기가</u> 말소 된 경우에도 이미 설정된 동산 담보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 치지 아니한다.

제27조(매각대금 등의 공탁) ① 7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 등이 압류되거나 가압류된 경우 또 는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 등 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 가 있는 경우에 담보권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담보권설정 자의 법인등기 또는 상호등기 를 관할하는 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담보권자는 공탁 사실을 즉시 담보권자가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과 담보목적물 의 매각대금 등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거나 그에 관하여 권 리를 주장하는 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.

 ②・③ (생 략)
 ②・③ (현행과 같음)

 제30조(이해관계인의 가처분신청
 제30조(이해관계인의 가처분신청

제4조(담보권설정자의 <u>사업자등</u>
록 말소와 동산담보권의 효력)
<u>사업자등록이</u> -
제27조(매각대금 등의 공탁) ① -
-주소(법인인 경우에는 본점 또
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
<u>다. 이하 같다)</u>
즉시 담
보등기부에 등기되어 있거나 담
<u>보권자가</u>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등) ① 이해관계인은 담보권자가 위법하게 동산담보권을 실행하는 경우에 담보권설정자의법인등기 또는 상호등기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21조제2항에따른 동산담보권 실행의 중지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.

②·③ (생 략)

제37조(준용규정) 채권담보권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동산담보권에 관한 제2장과 「민법」 제348 조 및 제352조를 준용한다.

제39조(관할 등기소) ① (생 략)

- ② 등기사무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지정·고시한 지방법원, 그 지원 또는 등기소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,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.
- 1. 담보권설정자가 법인인 경우: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

<u>ㄷ</u> ) ①
주소를
③ ③ (커피크 코스)
②·③ (현행과 같음) 제37조(준용규정)
세3/조(군중비정)
<u>제2장과 「민법」 제348</u>
조, 제352조 및 「민사집행법」
제273조제3항을
제39조(관할 등기소) ① (현행과
같음)
②
<u>&lt;삭 제&gt;</u>

소재지

- 2. 담보권설정자가 「상업등기 | 법」 제30조에 따라 상호등 기를 한 사람인 경우: 영업소 소재지
- ③ (생략)
- 항) ① (생 략)
  - ② 담보등기부에 기록할 사항 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담보권설정자의 상호 또는 명칭 및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
    - 경우: 본점 또는 주된 사 무소 및 법인 등록번호
    - 나. 담보권설정자가 「상업등 기법 시 제30조에 따라 상 호를 등기한 사람인 경우: 성명, 주소, 주민등록번호 및 영업소

2. · 3. (생략) <신 설>

<삭 제>

③ (현행과 같음)

제47조(등기부의 작성 및 기록사 제47조(등기부의 작성 및 기록사 항) ① (현행과 같음)

1. 담보권설정자의 성명,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(법인인 경우 에는 상호 또는 명칭, 본점 가. 담보권설정자가 법인인 또는 주된 사무소 및 법인등 록번호를 말한다)

- 2. · 3. (현행과 같음)
- 3의2. 담보권설정자나 담보권자 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 외국민이거나 외국인인 경우 에는 「부동산등기법」 제49

4. ~ 11. (생 략) 제51조(등기의 경정 등) ① (생 략)

② 담보등기부에 기록된 담보 권설정자의 법인등기부나 상호 등기부상 상호, 명칭, 본점 또 는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(이하 "상호 등"이라 한다)가 변경된 경우 담보등기를 담당하는 등 기관은 담보등기부의 해당 사 항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. ③ 제2항의 직권변경을 위하여 담보권설정자의 법인등기나 상 호등기를 담당하는 등기관은 담보권설정자의 상호 등에 대 한 변경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담보등기를 담당하는 등 기관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 다.

	<u>조</u> 조	네1힝	-제2	2호	또는	저	4호	에
	따라	가 부	나여	받은	부동	등산	등기	용
	등	루번:	<u>호</u>					
4.	~	11.	(현	행과	· 같음	<del>)</del>		
제5	[조(	등기	의	경정	등)	1	(현	행
J.	나 같	음)						
2	)							
			발	법인등	등기부	<u>-</u> 상-		
						<i>,</i>	사무	<u>소</u>
3	)							
					- <u>법</u> 인	]등;	기를	